

## 단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3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□ 개정이유

교육원의 설치목적과 조직의 성격상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 및 연수과정 편성·운영을 분장하는 전문부서가 선임부서가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조례 명칭에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함 (안 제명).
- 현재 총무부가 선임부서로 되어 있는 직제를 교육원 설치목적에 맞도록 교학부·연수부·지도부 및 총무부 순으로 개정함 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.
-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부서 서열에 따라 재조정함 (안 제7조 - 제10조).

□ 근거법령 : 해당없음

□ 조례안 : 별첨

#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예산상황 : 해당없음
- 참고자료 : 전국 각 시·도 교원연수원 조직 현황

##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단재교육원설치조례"를 "충청북도단재교육원설치조례"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"총무부, 교학부, 연수부, 지도부"를 "교학부·연수부·지도부 및 총무부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교학부장, 연수부장,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"을 "교학부장·연수부장·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"으로 한다.

제7조를 제10조로, 제8조를 제7조로, 제9조를 제8조로,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